

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44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2017년부터 대학의 인적·물적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, 그간 청년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음.
- 나.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투자실적이 있어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스타트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, 판로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, 역량 있는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,
- 다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시 설 명	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
소 재 지	서울 광진구 자양동 2-3, 3층(더라움펜트하우스) 서울 광진구 자양동 2-2, 3층·8층(건대입구역자이엘라)
시설규모	연면적 3,498㎡
시설용도	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집중 육성(Scale Up)

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23.3.1.~2026.2.28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- 소요예산 : 2,500백만원('23년 예산안 기준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「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시장의 책무) 및 제15조(대행·위탁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캠퍼스타운 청년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육성한 창업기업이 3~7년차에 경험하는 데스밸리(죽음의 구간)를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VC 후속 투자 연계, 국내외 판로개척,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함.

- 또한, 캠퍼스타운 창업생태계가 창업밸리로 도약하는 데에는 캠퍼스타운 대학 간 연계, 다양한 민간기업, 투자자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므로 창업 기업 보육지원에의 전문성과 민간 창업 주체들과의 네트워킹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
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센터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
 - 프리시리즈 A단계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선발·육성
 -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처방 지원
-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거점 구축
 - 투자자가 육성·투자까지 전과정 참여, 투자기관과 사업모델 검증
 - 데모데이, 전문가·VC 네트워킹 행사 등 정기적 투자 유치기회 제공
- 캠퍼스타운간 네트워킹 및 국내·외 민간 협력사업 활성화
-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인재 양성 및 투자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2022.9.2.) 심의 결과 : 적정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건대입구역 인근 기부채납 시설에 조성된 ‘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 센터(“동북권센터”)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신규로 제출됨.

나. 캠퍼스타운 조성과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현황

- 캠퍼스타운 사업은 창업과 주거·문화·상권·지역협력 등을 통합 재생하는 방식의 종합형(4년간 개소당 80억원)과 프로그램 중심의 단위형(3년간 15억원)으로 운영되고 있음.
- 2017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현재 제4기(2022~2025)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38개 대학이 참여하여 창업공간과 창업팀을 육성한 결과, 6천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806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함.

<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분야 주요 성과 >

[창업 공간·팀·일자리]	[매출·투자 발생]
✓ 창업시설 : ('17)24개소 → ('22)95개소 (296%)	✓ 매출액 : ('17) 3.8억원 → ('21) 904억원 (9,031%)
✓ 창업공간 : ('17) 42실 → ('22)715실 (1,602%)	✓ 투자유치 : ('18) 44억원 → ('21) 806억원 (472%)
✓ 창업팀 : ('17) 87팀 → ('22)1,887팀 (2,069%)	✓ 지적재산 : ('17) 18건 → ('21) 1,381건 (7,572%)
✓ 창업일자리 : ('17) 152명 → ('22)6,172명 (3,931%)	

- 그러나 캠퍼스타운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창업기업이 2~7년차에 경험하는 ‘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¹⁾’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하게 됨.
- 이에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동북권센터를 조성·운영함.
 - 동북권센터는 건대입구역 특별계획구역(더라움펜트하우스, 건대입구 자이엘라)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(630%→800%)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임.
 -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(2022. 5.) 이후 민간위탁(2023. 3.) 운영 전까지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공유오피스 멤버십 등의 운영·관리를 위해 용역을 시행 중임.

< 동북권센터 현황 >

시 설 명	면적(㎡)	사용층	기업공간		공용공간	개소 시기
			독립	개방		
자양동 2-3 (더라움펜트하우스)	2,576	지상 3층	4개 (45좌석)	84좌석	회의실(7), 사무실(1), 공유키친(1), 폰부스(3), 라운지	'22.9.
자양동 2-2 (건대입구역 자이엘라)	716	지상 3층	-	51좌석	회의실(2), 공유키친(1), 폰부스(3), 라운지	'23.3. (예정)
	206	지상 8층	-	20좌석	회의실(1)	'23.3. (예정)

1) 죽음의 계곡 : 초기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을 나타낸 용어

- 올해 9월에 개관한 더라옴펜트하우스(3층)는 독립형(4개)과 개방형(84좌석) 기업공간과 회의실, 사무실, 공유키친 등을 운영 중이며, 건대입구역 자이엘라(3층, 8층)는 개방형 기업공간(20좌석)과 공유키친, 라운지 등을 마련해 내년 3월 개관 예정임.

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

- 서울시는 현재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‘동북권센터’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역량을 갖춘 민간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관리(시설형) 할 계획임.
 - 동북권센터의 주요 사무는 캠퍼스타운 관련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, 성장유망기업²⁾의 투자유치 전략거점 구축, 네트워킹 및 민간 협력사업 활성화, 인재 양성, 시설관리 및 운영 등임.
 - 해당 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은 3팀 9명(센터장 1, 팀장 3, 직원 5)으로 구성되고, 예산은 총 25억원으로 인건비(5억 7천 7백만원), 운영비(4억 5천 7백만원), 사업비(11억 5천만원), 위탁수수료 등(2억 6천 6백만원)으로 편성됨.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거나,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.

2)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또는 투자유치 3억원 이상의 기업

- 창업지원 분야는 창업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다양한 창업 주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의 전문성·효율성·창의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캠퍼스타운 출신 성장유망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, 서울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용공간의 조성³⁾과 스케일업에 초점을 둔 전문 민간 육성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.
- 이에 서울시는 초기단계를 극복한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의 고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년까지 2개 권역에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임³⁾.
- 다만, 시설형 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(행정재산)의 운영관리 위탁이 수반되므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해당 시설과 관련된 세입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⁴⁾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동북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제출된 바,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.

3) 홍대입구역(서북권, 2024), 중앙대인근(서남권, 2026)

4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~④ 생략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한편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13조⁵⁾에서 “성장유망창업기업”을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,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이나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%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“성장유망기업”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시우	02-2180-8055

5) 제13조(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)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(이하 “성장유망창업기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
2.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